Ⅲ. 언론중재위원회

1. 설치배경

언론은 국가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나 현상들 또는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가는 공공기관, 책임자들의 국가 및 사회운영방향 등을 비롯 지구촌의 움직임 중 주요한 것들을 기사로 작성하여 보도하는 뉴스매체이다. 공공기관이나 사람들은 이 매체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알 수 있고 공공기관은 그 흐름을 대상으로 갖가지 정책 및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간다.

언론은 세상의 모든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기사화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것보다 큰 가치를 갖게 되고 그 가치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다. 언론을 가리켜 무관의 제왕이라 부르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언론의 보도내용은 사실에 근거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형평성 및 계도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언론의 책무(accountability)이다.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공적 또는 사회적 책임이다. 언론의 자유가 확보되는 만큼 그에 비례한 공적 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장치가 언론중재위원회 설치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근거 1981년 3월 31일 설립된 후 사반세기인 25년이 넘는 세월동안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 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설립 초기에는 언론계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의 핵심중재대상이었던 반론보도청구권의 위헌시비도 제기된바 있으나 반론보도청구권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언론은 언론기관이 누릴 수 있는 자유만큼 사회적 책임도 지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왔다. 실제로 지난 25년간(1981. 3. 31.~2006. 8. 31.) 언론조정 건수가 9,930건에 이르는 것과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신청인의 96.4%와 피신청인 95.0%가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정한[8] 것 등이 이를 잘 증명해 준다.

2. 성격 및 기능

1) 성격

법은 국가마다 다르다. 한국의 경우는 법원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등의 이원적 구제방법을 취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피해의 조정·중재, 손해배상 등의 제도적 취지를 구현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언론중재법 제8조 제1항), 공무원, 정당인, 현직언론인, 선거후보자 등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는 중립성(동법 제8조 제2항), 법관, 변호사, 전직언론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중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전문성(동법 제7조 제3항), 중재위원회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인정하는 공정성(동법 제10조), 중재부의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는 민주성(중재법 제9조 제2항), 중재·조정은 중재부에서 담당하고 중재부는 당사자에게 자료제출 명령권과 증거 조사권을 인정하고 사무지원을 위해 사무처를 설치한다는 능률성(동법 제9조, 제20조, 제11조), 중재부의 구성, 위원회 규칙제정 등의 권한은 위원회가 갖도록 한다는 자율성(동법 제7조 제2항)등을 확보하고 있다.

2)기능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은 앞에서 제시한 언론중재제도의 주요내용과 같다.

3. 기구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총회, 운영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 중재부, 사무처 등의 기구를 두고 있다.[9)]

위원총회는 중재위원 80인으로 구성되고 임원, 운영위원, 시정권고위원 등을 선출하며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사업실적과 결산 및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기본규칙의 제정 및 개정,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제출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일을 한다.

운영위원회는 중재위원 9인으로 구성되어 위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위원총회에 상정할 안건, 기본규칙 이외의 제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선거기사

---

8) 권혁남, “언론중재법시행에 따른 언론중재제도의 변화와 과제”,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자료, 2006, 7, 5, P. 4.

9)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편람, 2005, PP. 10~11.

심의위원의 위촉동의에 관한 사항, 기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중재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언론보도내용의 국가, 사회,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자체적으로 혹은 신청을 받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시정권고심의기준의 제·개정 기타 시정권고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중재부는 중재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전국에 16개소(서울6,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에 설치되어 있다. 중재부는 조정 내지 중재 신청건에 대하여 정정, 반론,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처는 조정심의본부(조정1~2팀, 심의팀),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법무상담팀, 교육홍보팀, 조사연구팀), 운영본부(기획혁신팀, 예산회계팀, 총무팀)등 2본부 1센터 9팀과 10개의 지역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Ⅳ. 언론중재위원회의 미래과제

인간은 정보를 먹고 사는 동물이다. 언론은 정보교환의 최고의 수단이다. 그렇기에 언론은 인간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단은 인류의 삶을 비옥하게 하는 일을 맡는다는 의미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언론은 언론의 공적인 책임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 어느 누구나 권력기관으로부터 압력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쓰고 말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헌법정신은 어디까지나 기사로서의 공정성, 객관성, 사실성, 중립성, 자율성, 형평성, 정의성 등의 기준과 부합될 것을 전제로 하는 정신이다. 이러한 기준들과 부합되지 않는 기사는 인간의 삶을 비옥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척박하게 하는 독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들의 자질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자들은 맑은 양심, 성숙한 양식 그리고 대낮같이 밝은 정직을 생명으로 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발표(방송)하여야 한다.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 기사는 생명이 없는 죽은 기사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의 자유는 생명이 출렁이는 기사를 통해 언론기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언론기자들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